

34. 쿠바 (Cub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	가입자 1%~5% 사용자12.5%(공공), 14.5%(민간)	가입자 2.5% / 5% 사용자12.5%(공공), 14.5%(민간)	가입자 보험료 변경
연금수급 개시 연령	남 65세, 여 60세	남 65세, 여 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30년	30년	-
노령연금 지급률	가입기간 1년당 최근 15년 중 최고구간 5년 월 평균 소득의 2% (30년 가입시 60%)	가입기간 1년당 최근 15년 중 최고구간 5년 월 평균 소득의 2% (30년 가입시 60%)	-
일시금	없음	없음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3년, 1964년, 1979년(사회보장)
- 현행법 : 2008년(사회보장, 2009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보편적 제도, 사회보험, 사회부조

3 적용대상

- 보편적 제도 : 쿠바 거주민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
 - 특별제도 : 군인, 정부 공무원, 자영자, 화가, 음악가, 농업 및 비농업 협동조합원
- 사회부조 : 쿠바 빈곤층 거주민

○ 가입자

- 보편적 제도, 사회부조 : 없음
- 사회보험제도: 월소득 20 CUC (500 CUP)까지는 2.5%이고, 월소득 20 CUC(500 CUP) 초과는 5%

○ 자영자

- 보편적 제도, 사회부조 : 없음
- 사회보험 : 비대상

○ 사용자

- 보편적 제도, 사회부조 : 없음
- 사회보험
 - 임금지급 총액의 12.5%(공공부문) 또는 14.5%(민간부문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, 상한 소득 없음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, 산재급여 재원으로 사용됨

○ 정부

- 보편적 제도, 사회부조 : 총 비용
- 사회보험 : 모든 결혼금 재정 지원 ; 사용자일 경우 보험료 납부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고용 기간이 30년 이상인 65세(남자) 또는 60세(여자) 도달자
 - 고용 이력의 75% 또는 퇴직 직전 15년 동안의 기간이 고되거나 위험한 직종이었던 경우 60세(남자) 또는 55세(여자) 도달자
 - 가입자는 퇴직 직전 또는 연금 수급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고용 중이어야 함
 - 부분연금 : 근로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65세(남자) 또는 60세(여자) 도달자 ; 가입자는 퇴직 직전 또는 연금 수급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고용 중이어야 함
 - 완전 또는 부분 노령연금 수급과 함께 퇴직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하며 퇴직 전에 종사했던 직업과 다른 직업에서 근무할 경우 임금과 연금 모두 수급 가능
 - 가입자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 우대로 보충금이 지급됨
 - 노령연금의 해외지급 불가

- 노령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65세(남자) 또는 60세(여자) 도달이나 고용기간이 20년 미만
 - 근로 능력이 없고 부양해줄 가족 구성원도 없는 경우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고용 종료 60일 이내거나 고용 중인 동안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통상근로가 완전하게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
 - 전문의료위원회가 장애정도 판정
 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의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
 - 부분장애연금 : 육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감소하였으나 일정 조건 하에 계속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자
 - 가입자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 우대로 보충금이 지급됨
 - 보훈수당 : 가입자가 국가수호, 생명구조, 폭력범죄 예방, 공공재 보호 관련 수행 중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
 - 장애연금의 해외지급 불가
- 장애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근로 능력이 없고 부양해줄 가족 구성원도 없는 경우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, 또는 사망이나 실종 당시 고용 중이었거나 사망이나 실종 전 6개월 이내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사망 당시, 사망자와 1년 이상 혼인 또는 동거하거나 사망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여성 유족배우자 또는 파트너(사망의 원인이 사고인 경우 수급요건 제한 없음) ;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인 남성 유족배우자 또는 파트너 ; 17세(장애자이며 경제적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경우 또는 고등교육을 받은 완전 고아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) 미만 고아 ; 피부양 부모
 - 보훈수당 : 사망자가 국가수호, 생명구조, 폭력범죄 예방, 공공재 보호 관련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지급
 - 유족연금의 해외지급 불가
- 유족급여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근로자나 노령/장애연금 수급자의 유족으로,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 능력이 없으며,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지급
- 장례급여(보편, 현물)
 - 최소 수급요건 없음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고용기간 최종 15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 동안의 월 평균소득 60%에 30년을 초과하는 고용기간 1년당 월 평균소득의 2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근로를 다시 시작한 연금수급자는 근로 복귀 후 고용기간 1년당 월 평균소득의 2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부분연금 : 고용기간 최종 15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 동안의 월 평균소득 40%에 20년을 초과하는 고용기간 1년당 월 평균소득의 2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, 예외적 우대 보충금으로 노령연금의 10%~25%를 지급
 - 월 최저 노령연금액 : 월 280 CUP(11.20 CUC)
 - 월 최대 노령연금액은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90%(예외적 우대 보충금 포함)
 - 급여조정 : 사회·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됨
- 노령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정기 급여로 지급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 - 급여조정 : 사회·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
 - 완전장애의 경우 고용기간 20년까지는 최종 15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 동안의 월 평균소득 50%에, 고용기간 20년 ~ 30년은 1년당 월 평균소득의 1%씩 가산하고 30년을 초과하는 고용기간 1년당 월 평균소득의 2%씩 가산한 금액 지급
 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연금의 20% 지급
 - 월 최저 장애연금액 : 월 280 CUP(11.20 CUC)
 - 월 최대 장애연금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90%(보훈수당 및 예외적 우대보충금 포함)
 - 부분장애연금 : 장애발생 전년도 평균 임금의 60%를, 가입자가 직업 변경, 이직, 장애 적응을 위한 근로시간 감소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 또는 재활하는 동안 최대 1년간 지급. 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장애 발생 전후 가입자 임금 차액의 50% 지급
 -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, 예외적 우대 보충금으로 장애연금의 10%~25%를 지급
 - 보훈수당 : 고용기간 최종 15년 중 소득이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의 20% 지급
 - 급여조정 : 사회·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됨
- 장애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정기 급여로 지급
 - 급여조정 : 사회·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됨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장애연금 수급자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, 첫 달에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 지급하고 ; 그 이후에는 피부양 유족 수에 따라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70%(1명), 85%(2명) 또는 100%(3명 이상) 지급 ;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격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망자 소득의 100% 1개월 지급
 - 연금액은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간에 균등 배분
 - 40세 미만으로 근로가 가능하고 피부양자가 없는 비근로 여성유족배우자는 최대 2년까지 연금 수급 가능 ; 근로 여성유족배우자는 자신의 임금 외에 유족연금 수급 가능
 - 보훈수당 : 사망자 최종 고용기간 15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의 20% 지급
 - 월 최저 유족연금액 : 280 CUP(11.20 CUC)
 - 근로 여성유족배우자의 최대 유족연금액은 합산된 유족연금액의 25%
 - 급여조정 : 사회·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됨
- ### • 유족급여(사회부조, 자산조사)
- 정기 급여 지급
 - 급여조정 : 사회·경제적 요소에 기초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됨
- ### • 장례급여(보편적 제도, 현물) : 무료 장례 서비스 제공

7

관리운영기관

○ 노동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)

- <http://www.mtss.gob.cu>
- 예방·부조·사회노동 위원회(Directorate of Prevention, Assistance and Social Labor) 및 국가사회보장기관(the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, INASS)를 통해 제도 감독 및 운영

○ 사회보장기관 지방사무소(Municipal office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, INASS)

- 사회부조 신청 처리 및 무료 장례 서비스 제공

○ 국민저축은행(People's Savings Bank)

- <http://www.bpa.cu>
- 연금 지급

○ 국세청(National Tax Administration Office)

- <http://www.onat.gob.cu>
- 보험료 징수 및 관리

<2019년 ISSA 자료>